

#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송도호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성준, 김인제,  
김지향, 김춘곤, 남창진,  
박영한, 박칠성, 봉양순,  
성흠제, 아이수루, 왕정순,  
, 유정희, 이상욱,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최민규, 한 · 신 의원(20  
명)

## 1. 제안이유

-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기존의 '청와대소방대'의 명칭이 '대통령경호 처소방대'로 변경되어 소방관서장의 대상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내의 하부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2022.11.30.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으로 편제·신설됨에 따라 소방관서장에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을 신설코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소방관서장의 범위 중 청와대소방대장을 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3호~제4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의 “청와대소방대장”을 “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장례식)</p> <p>① (생   략)</p> <p>②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u>청와대소방대장</u></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3조(장례식)</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u></p> <p>4. <u>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u></p>